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0028 재산세 납부의무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5. 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인 [redacted]구 C,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원고로, 위탁자 및 수익자를 B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2021. 5. 7.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E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6. 10.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납세의무자를 새로운 위탁자인 E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21. 7. 1. 국민신문고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 관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21.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1. 7. 9.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고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답변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거부처분은 신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등기가 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고,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답변이 처분인지 여부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제1항은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제1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된 상속자'(제2호),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제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제4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납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미처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재산의 소유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거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에 관한 공부상 기재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되기 전의 주된 상속자, 신탁자에게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과세관청의 원활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위하여 공부상 소유자 등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공부상 소유자 등에게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고의 내용대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내용대로 과세대장에 등재하거나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원고의 민원질의에 대한 피고의 단순한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도 아니고, 이 사건 신고의 수리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답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답변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답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 경유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0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끝.